

‘부러진 화살’과 사법개혁

영화 ‘부러진 화살’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해 ‘도가니’에 이은 뜨거운 관심이 우리의 사법현실을 둘러싸고 분출했다. 이러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법조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분명 국민들은 그 영화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 법조계가 현재의 상태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개선의 내용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소위 ‘석궁사건’의 가해자인 김명호 교수는 필자와 약간의 개인적 인연을 갖는다. 영화를 보면 미국에 있던 그가 고국에서 재임용탈락교수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기쁨에 들떠 부인에게 이제 다시 대학에 돌아갈 길이 열렸다고 말한다. 이 무렵 나도 미국유학 중이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 메일계정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는 엄청난 양의 메일을 보내며 하소연한다. 나중에는 전화도 직접 걸어왔다. 그러나 나에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은 아무 것도 없었다. 기껏해야 백면서생의 대학 교수에 불과했다. 더욱이 연구년을 받아 한국을 멀리 떠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어 있겠는가? 그 후 그는 귀국하여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석궁사건’을 일으킨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법관과 필자는 더욱 개인적 인연이 깊다. 오랜 세월 에 걸쳐있는 인연이다. 뿐만 아니라 그 법관의 인격과 품성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보낸다. 이것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숙성된 것이다. 이

신 평

- (前) 인천, 서울, 대구지방법원 판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이 있다. 특히 그가 석공을 아예 맞지도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한,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그가 한 말에 한 치도 거짓이 섞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석공사건’ 그리고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 대하여 조금 언급을 하고 싶다. 그것들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가 만만찮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 안에서 떠오른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적 열망을 읽고 싶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두 사람의 관계는 하찮은 것일지 모른다.

김 교수가 안게 된 비극은 대학에서 출발한다. 영화에서는 재판과정에서 그가 겪는 부당한 처우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김 교수에게 안긴 것은 그의 교수 재임용탈락이다.

김 교수의 재임용탈락은 무엇보다 그가 입학시험문제의 출제요류를 지적한 때문이다. 이때부터 그와 대학의 명예를 중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다른 교수들과의 대립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는 혼자 잘난 체하는 시건방진 교수로 몰렸고 곧 교수 재임용탈락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를 보다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상대방 측에서 의도적으로 제기한 여러 혼선에 속지 말자는 말이다. 그렇다. 그들은 진실의 얼굴을 가리고 비열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썼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그러진 모습이 표면에 부상한다. 이를 한 마디로 축약해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때때로 과시하는 폭력적 야만성, 더구나 약한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폭력행사이다. 그것은 더욱이 거대한 조직의 힘을 빌려서 행사되기 때문에 이에 맞서는 개인의 숨통까지 끊어버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의 쓴 맛’이 바로 이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나, 대학사회는 ‘상아탑’이라는 고고한 이미지에 항상 어울리는 곳은 아니다. 대학사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언제나 사람들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어찌면 평생 전근 한 번 가는 일 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은 더 자주 생긴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학은 지성적으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곳이 아닐 수 있다. ‘하얀 거탑’이니 ‘브레인’이니 하는 드라마를 본 사람은 그 실상을 조금 들여다 본 셈이다. 드라마라서 교수들 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실제의 양상이 그러니 드라마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도제관계의 설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그 갈등이 더 증폭되나, 대학사회의 다른 곳에서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대학내의 파벌싸움은 꼭 닭싸움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좁은 닭장 안에서 우위에 선 닭은 상대의 너수가 허영게 드러나도 멈추지 않고 쫓아댄다. 그 잔인성은 보는 사람이 몸서리칠 정도이다. ‘닭대가리’라는 말이 공연히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닭대가리’를 가진 닭들이 벌이는 ‘닭싸움’이고, 교수들 간의 파벌싸움이 이를 닮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실력있는 수확자였던 김 교수, 오직 그가 입시문제 출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그 시정을 구했다는 이유로 ‘조직의 배신자’를 쫓아내기 위해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김 교수와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잔인무도한 행위였으며, 그 결과로 김 교수가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따위를 그들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알고서야 그래도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한 번 빼어난 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김 교수를 난도질해 들어간다. 김 교수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자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후속행동에 착수한다. 그들은 김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이 현저해 부족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을 뿐이지 입시문제 오류지적과는 하등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낸다. 그 한 예로 김 교수가 데모하는 학생들을 향해 형편없는 인간들이라고 비난하는 따위에서 그 입증근거를 찾는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언동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 단정할 것인가? 그는 최소한, 다수가 은폐하려고 하던 입시문제 출제의 오류를 용기 있게 지적한 사람이다. 이 시점에서 판단하자면, 김 교수는 학자적 양심 혹은 양식을 갖춘 사람이고, 은폐에 가담한 교수들은 다른 점은 차치하고라도 대학교수로서는 결격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후자가 전자에게 삿대질하며 욕을 하는데, 그 내용은 지엽적인 사항들이다. 만약 김 교수에게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면, 김 교수를 쫓아낸 교수들은 열 배 백 배 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러나 어이없게도 법원은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법원은 오직 김 교수가 가진 작은 흠에 집중하여 살폈다. 이 사건이 가진 전체적인 윤곽을 살피길 포기하였고, 또 반대편 교수들이 지닌 비윤리적 요소는 논외로 쳐버렸다. 조직과 개인이 맞섰을 때 법원이 흔해 해오는대로 말이다. 여기에서 또 약간의 의혹이 발생한다. 1심의 재판장은 그 대학 출신이고, 대학의 소송대리인은 또 그 재판장과 특수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었다. 연고가 유난히 힘을 발휘하는, 그리고 그것이 재판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김 교수의 입장은 처음부터 세찬 바람이 부는 앞에 선 촛불

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2심에서는 1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인했다. 나중에 그 배석을 했던 김 모 부장판사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기로 합의까지 마쳤다가 이를 번복했다고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발설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조금 석연찮은 점이 있다. 김 교수가 낸 청구취지에 잘못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했다는데 어떻게 일단 합의까지 마친 결론을 바꾸어버리는가? 오랜 법조경험 그리고 재판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재개된 변론에서 집중적인 대학 측의 로비를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뭉게뭉게 일어난다.

조직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개인에 대해 우리 사회 어느 데에서도 이를 좋게 봐주는 곳은 잘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조직의 편을 들어 준다. 더구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도전한 개인을 곱게 볼 리는 없다. 이런 선입견, 편견에 법원도 물들어 있다. 그래서 법원은 게임의 공정한 집행자 역할을 해오지 못했고, 조직의 폭력에 맞선 개인은 언제나 짓눌려졌다. 이 점에서 기본적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법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행사한 적은 별로 없다.

법원에서의 패소로 김 교수의 인생은 아주 절단이 나버렸다. 최소한의 교육자적 자질도 갖지 못한 형편없는 인간으로 법원은 김 교수를 판정해버린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으로 내린 판정이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었다. 무시무시한 검은 파도가 그를 덮쳤다.

비슷한 일을 겪었던 내 경우를 참고로 말해보자. 내가 1993년에 현행헌법에 의한 법관재임용에서 처음 탈락되었을 때의 일이다. 대법원에서는 재임용탈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김 교수가 속했던 대학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했다. 아니, 더했다. 대법원의 담당자는 법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내 사생활이 문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물설 틈 없는 공작을

펼쳤다. 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대법원은 과감하게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날조하였다. 멀리서 이를 어렵פות이 전해 들으며, 아이들 엄마는 한 때 죽음으로 억울함을 풀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백수의 나는 매일 집 뒤의 대구 용지봉에 도시락 하나를 싸들고 올라갔다. 그 해 여름이 지나고 나무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여 눈으로 헐벗은 나신을 덮기까지 그랬다. 정상에 올라 집을 향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그 처절한 고독과 맞섰다. 판사로 복직될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으나 해가 바뀌어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싸운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은 내 사무실엔 사건을 의뢰해오는 사람이 없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이것이 모두 내 전생의 업이거나 아니면 판사로서 사건을 잘못 처리한 업보라고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유감표시라도 해주기를 요청해왔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껏해야 그때의 대법원과 지금의 대법원은 많이 달라졌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그때의 대법원은 여전히 지금의 대법원이다.

참 아쉬운 일이다. 재판부가 대학사회에서 벌어지는 심한 과벌싸움의 결 모습이라도 슬쩍 훑쳐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이런 일에 항용 따르기 마련인 조직의 변명은 대체로 문제의 본질과 하등 관계없다는 점을 약간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결론은 다르게 났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애초부터 전혀 없었는지도 모른다. 대학이 상아탑이 아닌 것처럼 법원은 인권보장의 보루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차한 경우 법원 스스로 김 교수를 부당하게 매도한 문제의 대학처럼 행동하는 법원인 것이다. 하지만 여하튼 법원이 김 교수에게 처절하게 집단 린치를 가한 대학과 교수들 손을 들어줌으로써 실낱같이 희미하게 남아있던 김 교수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 뒤의 김 교수 삶은 과멸된 잔해가 아직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불과했다.

언제쯤 한국의 강고하고 거친 기득권 세력은 좀 점잖아질 것인가? 법원은 또 언제쯤 힘이 있는 존재이건, 힘이 없는 존재이건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힘을 가진 자들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사건의 진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될까?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기준이 일탈하기 십상인 법원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또 여타 우리 사회에 숨은 야만적 폭력행사의 현출을 막는 것이다. 사회에 편만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의 마련, 그것은 사법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해 법원은 그 기능적 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상당부분 민주적 성향을 향상시켜왔다. 그럼에도 아직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없다. 사건의 실체를 꿰뚫어보며 잘못된 것은 어떤 경우여라도 바로 잡겠다는 기백의 영혼이 없다. 김 교수 사건은 바로 그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